



스포츠 성평등 증진을 위한 과제: 입법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 검토*

A Task for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in Sports: Focused on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and Policy Direction

김현수 전(前)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 홍덕기** 경상국립대학교 부교수

Kim, Hyunsu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Hong, Deock Ki Gyeongsang National Univ.

요약

최근 여성의 스포츠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성평등 증진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정책적 측면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통한 스포츠 성평등 증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주로 여성 선수의 성폭력 피해구제 등으로 정책을 한정시켜 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Title-IX」의 입법으로 스포츠 성평등 증진이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성평등 관련 국제 기준과 한국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탐색했다. 둘째, 스포츠 분야의 성평등 관련 국제 기준과 한국 정부의 스포츠 성평등 정책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성평등 정책의 실천성 문제’, ‘성평등 증진을 위한 교육의 적절성 문제’, 그리고 ‘국가 성평등 관련 정책과의 합치성 문제’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 결과가 추후 정부 차원에서 스포츠 성평등 법안 검토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스포츠 성평등, 성폭력, 스포츠인권, 타이틀나인, 차별

Abstract

Recently, women's participation in sports has been expanding in Korean society. However, the sports policy has focused on the female athletes victims rather than dealing with structural problems of gender discrimination or promoting equality in sports through legisl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legislative policy such as Korean version Title-IX are necessary to promote sports gender equality. To do this, firs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gender equality and the Korean government's gender equality policy were examined. Secon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gender equality in the sports field and the Korean government's gender equality policy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the tasks for the domestic sports gender equality in sports policy were discussed focusing on 'the practicality of sports gender equality policy', 'the appropriateness of sports gender equality in sports education', and 'the consistency with the gender equality policy revealed in the basic plan of national plans of actio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is study provides thoughtful considerations to promote gender equality in sports including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and policy direction.

Key words: Gender equality in sports, Sexual violence, Human rights in sports, Title-IX, Discrimination

* 본 논문은 2022년 11월 17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종합포럼 및 2022년 한국여성체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함

** deockkikhong@gnu.ac.kr

서론

“어떠한 교육 활동이나 연방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활동들에 있어서 미국에 있는 사람 누구도 성별을 기준으로 참여를 제한받거나, 혜택이 거절될 수 없으며, 또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조미혜 등, 2015: 4).” 「Title-IX」

한국 사회의 체육/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별에 의한 차별 문제나 성폭력 문제 등을 논할 때 학자들은 미국의 교육평등법인 「Title-IX」을 자주 언급해 왔다(고은하, 2004; 곽정현, 이선희, 2014; 권형준, 2017; 김성진, 2014; 박두제, 원영신, 이재희, 2013; 서재철, 김방출, 2020; 이정규, 2015; 한건수, 2020). 1972년 6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미국의 학교 내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든 이 법은 여학생 체육활동에 획기적 변화를 불러왔다. 영어단어 37개의 단 한 문장으로 구성된 이 법으로 인해 “연방정부의 재정적 도움을 받는 교육적 노력이 일어나는 모든 곳, 예를 들어 운동경기, 학교 체육수업, 스포츠클럽, 레크리에이션, 교내대항 경기는 모두 「Title-IX」 법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조미혜 등, 2015: 3)”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안으로 인해 남자팀이 있는 학교는 여자팀을 만들어야 했고, 종목 선정, 장비 및 지원품, 경기 및 훈련 시간 배정, 코칭 기회, 라커룸 시설 등 모든 항목에서 남녀는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남학생의 1/10에도 못 미친 294,015명에 불과하던 여고생 스포츠 참여 인구가 2010~2011년 3,173,549명으로 무려 1,079%나 성장했다. 「Title-IX」 법이 시행된지 반세기가 지난 현재, 미국 여자스포츠는 정부 지원과 참여에 있어서 남학생들과의 격차를 없애며, 전 세계 스포츠에서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전영지, 2015. 6. 3.).

한편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 청소년 신체 활동량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된 여학생이 97.2%로 조사 대상 147개국 중 최악의 결과를 나타냈다(하채림, 2019. 11. 22.). 이는 유소년 시기의 신체활동 부진은 평생스포츠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더 심각하다(이규일, 홍덕기, 2017).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여학생들에게 운동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못하는 제약 환경들이 존재하고(이규일, 2020), 성별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시민의 권리로써 여성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인식이 남성에 비해 부족하다는 교육 현장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들은 일부 여성 스포츠 스타에 대한 심각한 성폭력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의 구조적 문제보다는 주로 여성 선수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표면적인 부분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 즉 스포츠 분야의 성평등이라는 본질적 문제가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드러난 현상에 의해 가려지는 것이다(김현수, 홍덕기, 2022).

최근 한국 사회도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일반화되고, 여성 스포츠인의 활동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¹⁾ 예를 들어, 축구, 씨름, 농구, 배구 등에서 여성들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 제작·편성되고 있음은 물론, 국제무대에서 여성 선수들의 선전으로 뚜렷한 팬덤이 형성되고, 여자 골프나 테니스의 대중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여성 스포츠 저변이 증가하는 중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의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Title-IX」 법에 따른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철폐 등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성별에 따른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조치들 가운데 현재 시점에서 이른바 ‘한국형 「Title-IX」’과 같은 입법 조치가 과연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인가를 검토하고, 학교체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여성의 지위 제고와 역할 변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첫째, 성평등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 및 한국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살펴보고, 둘째, 스포츠 분야의 성평등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 및 국내 스포츠 성평등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19년 대한체육회 등록선수 130,344명 중 여성은 29,999명(23.0%)이며, 전문체육 지도자 20,817명 중 여성은 3,760명(18.1%)으로 현저하게 적다.

셋째,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스포츠 성평등 정책 마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 사회의 스포츠문화에 있어서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성평등을 위한 국내외 법령과 정책

1. 성평등을 위한 국제적 기준들

성평등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주요 기준들은 관련 법령들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성평등을 포함하는 평등권 또는 사회권 등의 경우 특수성보다는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합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국제연합(UN)이 제정한 현장이나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특히 이 둘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협약들²⁾ 가운데 성평등 관련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이를 협약에 가입하여 국내에서도 법령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협약 중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CEDAW)’은 다른 협약의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CEDAW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인권 차원에서 인간(여성)의 존엄성 확인, 둘째, 여성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확인, 셋째, 평등권의 보호 및 증진, 넷째,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법령 및 제도 마련, 다섯째, 성평등 관련 선언 및 권고에 대한 수용, 여섯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의 차별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규정, 일곱째, 가사 분담과 출산 등 전통적 성역할 변화를 이행하기

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CRC)’ 등이 대표적이다.

위한 국가의 노력, 여덟째, 기타 선언과 법령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과 합의 확인 등이다. CEDAW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논문의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한다.

2. 한국 정부의 성평등 정책

1) 양성평등기본법

성평등³⁾의 내용을 다루는 관련 국내 법령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헌법」 제10조⁴⁾와 제11조 제1항⁵⁾을 바탕으로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것을 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성별에 의해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 관련 법령⁶⁾에 기초가 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외에 각종 개별 법령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와 성평등에 이르는 시책을 규정한 법령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개인의 정체성은 성별, 장애, 나이 등 다양한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상에서는 이러한 속성이 서로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차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021. 11. 25.).

3) 양성평등은 두 가지 성에 국한하는 용어이므로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권장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교체육 현장의 성평등 정책은 여성, 소녀, 논 바이너리(NON-BINARY), LGBTQI+ 등에 대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4)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5)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 제4차(2023-202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Plans of Actio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인권 NAP)은 각 국가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중장기 인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 관련 법·제도·관행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인권 NAP는 1993년의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 따라 각국에서 이를 수립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인권 NAP 권고안을 작성하여 권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법무부와 협의하여 인권 NAP를 수립하게 된다.

인권위는 이번 제4차 인권 NAP 권고에서 성평등을 위한 지속적 제도 보완을 주문하면서 100대 핵심과제 중 8~10개의 성평등 과제를 선정⁷⁾해 그 관심과 의지를 반영하였다. 예를 들면, 남녀소득 격차 해소 및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 강화,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2차 피해 예방,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또는 가정 폭력 예방, 사이버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정책 마련, 그리고 헌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 보장 필요, 장애인 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 대책 수립 등이다(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022. 8. 3.). 아울러 한국 정부는 현재 인권 NAP 수립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 「인권정책기본법」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 성평등 기준 및 정책

1. 스포츠 분야 성평등을 위한 국제적 기준들

1) 올림픽 협약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IOC)에서 제정한 올림픽 협약은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문건으로서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 대부분 국가는 NOC (National Olympic Committee)로서 IOC의 회원국이고, 종목별 단체들 또한 IOC와 협력 관계를 이루면서 세계 스포츠계의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IOC는 성평등과 관련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을 통한 양성평등의 수준을 넘어 다양한 성들을 가진 모든 인류가 차별 없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성적 지향성까지도 협약에 담아 성평등 올림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IOC의 성평등 기조는 올림픽 협약 소개(introduction to the Olympic charter) '참고(note)' 부분에서부터 그 의도가 잘 드러나는데, "올림픽 협약에서 실제 인물 지칭 시 사용된 남성형 표현은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여성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올림픽 이념의 기본원칙' 제4항과 제6항, 제2조 'IOC의 사명과 역할' 제7항, 제27조 'NOCs의 사명과 역할' 제2.5항, 그리고 제16조 '위원회'의 1.3항에서도 구체적인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의 원칙과 성평등 보장 의무를 적시하고 있다(IOC, 2020a).

(올림픽 이념의 기본원칙 제4항) "스포츠 활동은 인간의 권리이다. 모든 인간은 어떠한 차별 없이 올림픽 정신 안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올림픽 이념의 기본원칙 제6항) "올림픽 협약에 명시된 권리 및 자유는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지향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2조 IOC의 사명과 역할 제7항) "남녀평등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과 조직에서 스포츠에 있어 여성 발전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제16조 위원 제1.3항) "신임 위원은 선서식에서 아래의 선서를 통해 의무 이행을 수락함으로써 IOC의 위원이 된다. 'IOC 위원이 되는 영예를 수여 받고, 이와 같은 권한에 대한 의무를 명심하면서 <중략> 어

7) 관련 핵심과제는 재난, 참사 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차별금지 및 평등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온라인 혐오 표현 학산에 대한 대응, 성소수자,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 공적·민간 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 강화, 친밀한 관계에서의 젠더 폭력 방지, 사이버 성폭력 예방 및 대응강화, 상병제도 도입 및 운영 등이다.

며한 형태의 차별에 대항하고, 어떠한 환경하에서 도 IOC와 올림픽 운동의 권익을 증진할 것을 선서 합니다.”

(제27조 NOCs의 사명과 역할 제2.5항) “스포츠에 있어서 차별대우와 폭력행위에 저항하는 조치를 취 한다.”

올림픽 현장뿐만 아니라 IOC는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성평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테면 올림픽에 포함될 정식종목의 선정 과정에 성평등 관련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종목 선정 시 평가 기준으로는 8개 분야 39개의 기준, 74개 항목 중 14개의 항목이 직, 간접적으로 성평등과 관련된 지표이다.

성평등 관련 지표의 직접적 예로는 집행위원회 내의 여성의 수와 남성의 수(또는 동급) 비교, 최근 두 번의 올림픽 예선 경기에 남성 대비 여성이 참가한 국가연맹의 비교, 여성 스포츠위원회 내에 경기단체 종목이나 특정 여성 종목에 대한 모든 계획의 존재 여부 등이 있으며, 간접 지표로는 올림픽에서부터 주니어대회에 이르기까지 각종 대회에서 성별에 따른 개최 원년, 개최 횟수, 국가연맹의 수, 메달 수, 입상 대륙 분포, 티켓 판매 등의 지표가 11종에 이른다(김현수, 김동규, 2013).

또한, IOC의 성평등 추진 노력은 최근 개최된 도쿄 올림픽에서는 출전선수 남녀 비율이 51:49로 거의 동수를 이룬 부분, 종목별 남녀 메달 개수 조정을 통한 동일성 확보, 남녀 혼성 경기의 증가, 성전환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 허용 등 성평등을 위한 실천의 범위를 점차 확장해나가고 있다(안혜민, 2021. 8. 6.). 또한 IOC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펴낸 「Olympic agenda 2020+5, 15 recommendations」에서도 IOC의 성평등 방침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협약(CEDAW)

올림픽 현장이 스포츠계에서의 성평등 기준을 보여 준다면 교육 분야에서 CEDAW는 제10조를 통해 포괄

적인 성평등의 기준을 보여준다. 즉 「Title-IX」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교육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CEDAW의 각 조항에 담긴 내용은 「Title-IX」과 더불어 미국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CEDAW, 제10조에 따라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진, 동질의 학교 건물과 장비의 수혜 등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남녀가 스포츠와 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일한’ 권리를 적시하여, 상황에 따른 불평등한 해석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CEDAW는 교육 분야를 넘어서 제11조 1에서 ‘고용 분야에서의 평등권’, 그리고 제13조에서 ‘경제적, 사회적 생활 영역에서의 평등권’을 언급하면서 “(c) 레크리에이션 활동, 체육과 각종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동일하게 확보할 것도 강조하고 있다.

3) 기타

올림픽 현장과 IOC의 성평등 방침, 그리고 CEDAW 외에 스포츠와 교육 분야에서 성평등과 관련하여 주목할 기타 협약으로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이 있다. 구체적으로 제28조 1에서는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 제29조 1. 항에서는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를, 그리고 제31조 2에서는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니세프에서 제정한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스포츠 원칙’에서도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나타난 내용들과 유사하게 “아동은 자신의 성별, 인종,

출생, 성 정체성, 언어, 종교, 문화, 정치·사회적 견해, 국가나 사회적 출신, 장애, 경제·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아동의 성격이나 재능, 신체 및 정신 발달 측면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나이에 맞는 학습, 놀이, 스포츠, 여가 및 오락 활동 기회를 충분히 제공” 등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유니세프, 2019).

한편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더 소외된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여성의 경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6조에서 “당사국은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가 다종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성별에 따른 불평등 철폐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될 부분임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여성이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의 경우 접근성 등 장애인 시설을 비롯한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의 문제와 더불어 젠더라는 구조적 문제의 이중적 차별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스포츠 향유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2. 국내 스포츠계 성평등 정책

1) 법령

「교육기본법」에서는 「Title-IX」처럼 학습자의 차별 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도 밝히고 있다. 특히 제17조의 2(남녀평등교육의 증진)에서는 구체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 수립과 법의 집행 방안, 교육에의 차별금지,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마련,

그리고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운영 등을 밝히고 있어 「Title-IX」으로부터 파생되는 성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들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차별’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별, 성적 지향 등과 같은 젠더를 중심으로 불평등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으며, 교육과 관련하여 제2조(정의) 제3항 다목에 “교육 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명시하여 성별에 따른 교육 불평등 역시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스포츠 성평등과 관련하여 체육진흥의 모범 역할을 해온 「국민체육진흥법」에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최근 공포된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차별금지와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스포츠진흥계획에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체육과 관련해서 「학교체육진흥법」에서는 「Title-IX」과 같이 우리가 체육계에서 성평등 관련 입법을 기대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성별에 따른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금지 방침이 더욱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구체적으로 제6조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에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적시하고, 이를 위한 예산의 확보, 주기적 감독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의2.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서는 세부적인 여학생체육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서도 관련 조치에 대한 감독 의무를 규정⁸⁾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8)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2(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① 교육부 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부 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항들을 명시⁹⁾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정부 부처 및 체육단체의 성평등 대응

정부 부처와 대한체육회 등의 단체에서도 성평등에 대한 정책은 지속해서 마련되어 왔다. 우선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성폭력 균절대책에서는 당시 남성 지도자가 약 90%를 차지하는 체육계의 남성 지배적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여성 지도자 인턴십, 경기지도자 자격증 취득 시 여성 20% 할당제¹⁰⁾ 등 특화된 양성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이후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정한 '스포츠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에서는 여성의 동등한 스포츠 활동 참여 권리 보장, 성적 불평등 구조와 남성 중심적 문화 해소를 위해 여성 지도자를 적극 양성 지원, 여성 선수들이 포함된 경우, 여성 지도자의 채용 우선 고려 등을 제시하여 스포츠계에서 성평등 기조를 확산하고자 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010. 12. 6.). 한편,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성폭력 방지대책으로 선수·지도자·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 등이 모색된 바 있다.

스포츠 인권침해가 크게 불거진 2019년 이후 관련 대책은 더욱 활기를 띠며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직장운동부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성평등 증진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평등권,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보장 정책 수립, 여성 선수 경력 단절 지원, 선수-가정 양립 보호 체계 구축, 지도자 성별 비율 관리 필요 등을 관련 기관에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020. 6. 23.). 또한, 2019년 대한체육회는 10대 혁신과

로 정한다. 등

- 9)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제8조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 준수 여부 및 기본지침과 계획 내용의 연관성, 2. 학교 체육활동의 계획 준수 여부, 3. 계획 시행에 따른 여학생 체육활동 진흥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10) 여성 지도자 할당제를 발표한 2008년 이전 10년간(1998-2007년) 여성의 자격증 취득 비율이 20% 이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출속으로 비판받은 바 있음.

제로 2020년부터 대한체육회 사업계획에 양성평등 기조를 확대하고, 여성 참여 제도적 보장하기 위해 여성 임원·간부 비율 및 지도자 배치 확대, 그리고 체육인 성인지교육 의무 및 정례화 등을 제시하였다(대한체육회 보도자료, 2019. 9. 26.).

한편,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키면서 한국 사회에서의 스포츠인권 문제는 폭력, 성폭력 등 침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차별을 극복하고, 스포츠계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여성 스포츠인들에 대한 권리 신장에 대한 과제를 비중있게 검토하였다(김현수, 홍덕기, 2022). 특히 성평등과 관련한 일반 인식(침해 및 차별)에 있어서 인권침해 취약성과 원인, 성별 차이에 대한 인식과 경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인식, 스포츠 참여로 인한 성취 경험과 보람, 목표 의식 등을 검토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선수 활동 전반에서의 경험에 있어서 인권침해 경험, 사적 관계 요구, 공동생활 중에 발생하는 문제,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 등을 주요 이슈로 상정하는 한편, 지도자들의 재생산권,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이해의 실태를 검토하기 위해 행정 및 지도자 배려 부족, 부당함, 불이익 우려, 임신, 육아, 경력 단절, 모성 보호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여성 지도자들의 진로 및 취업에 있어서 은퇴 후 성별에 따른 진로 차별, 채용 및 처우 불이익, 운동지속 어려움, 선발 제외, 은퇴 종용, 진로 제약 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관점은 여성 스포츠인의 인권상황 실태를 보다 확장된 시야에서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정책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여성 스포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함이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여성 전문체육인 실태 조사 및 정책권고에서도 경기 참여 기회, 장비·시설 등 지원 등에서 여성 선수가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 특히 보수, 고용 형태, 계약기간에서 남녀선수·지도자의 차별이 존재하는 점을 확인했고, 여성 지도자의 49%가 성희롱·성폭력 경험했으며, 초등학생을 제외 한 여성 선수 응답자의 65%가 생리통이 있어도 훈련 혹은 경기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해 절반 이상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또한,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고 모성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¹¹⁾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따라서 여성 전문체육인들에 대한 차별 상황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지도자 선발, 취업, 성평등 원칙에 근거한 단체 운영, 고용차별에 대한 관리, 감독, 성평등 내용을 포함한 인권 교육, 모성 보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관련 정계 기준 강화 등을 권고하는 한편, 여성 전문체육 인들의 인권침해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첫째, 단체 관계자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별도의 인권침해 예방 교육 안 마련, 둘째, 참여형·소통형 인권 교육 방안 마련, 셋째, 법령에 따른 성희롱 근절 및 모성 보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 마련, 넷째, 법령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등 근절 및 피해 방지 및 보상 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 마련, 다섯째, 체육단체 임원들의 지도자에 대한 괴롭힘, 휴식권 침해 행위 등에 대한 정계 기준 마련 및 선수, 지도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정계 기준 강화 등이다(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021. 11. 25.).

한편 학교체육 현장의 성평등을 관장하는 근거가 되는 법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이다. 이 조항은 구체적으로 ① “교육부 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 평등적인 체육활동 환경조성 및 종목 선정을 통한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신체 능력을 반영하는 종목 선정 및 여학생 특화프로그램 운영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학교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교육부, 2020). 특히 2021년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추진 목표로 4대 중점과제와 하위 22개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관련 대책은 ‘1-7.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그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신체적 차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여학생 선호 종목, 특정 요일 여학생 우선 사용, 탈의실 확보를 여학생체육 활성화의 기조로 삼는 등 본질적인 교육 평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교육부, 2021).

스포츠 성평등 정책의 지향점

1. 성평등 정책의 실천 가능성 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법령과 제도들 속에는 교육과 스포츠 분야에서 성평등을 위한 규정들이 이미 국제적인 기준에 근접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 차원에서 한국 사회 스포츠 분야의 성평등이 해외 선진국의 수준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미국 사회에서 「Title-IX」의 의의는 정책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해 그로부터 파생되는 시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했다는 점에 있었으나 ‘한국형 「Title-IX」’의 도입은 마치 입법만이 능사인 것으로 오해하고,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서구의 성평등 법체계만이 대안인 것처럼 비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선 논의에 미루어 한국 사회 스포츠 성평등의 문제는 법체계가 미비한 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문제의 원인을 여성 스포츠 선수의 성폭력이라는 표피적 현상에만 주목하고 이를 뼈질하기 위한 ‘돌려막기’ 정책을 마치 새로운 처방인 것처럼 제시하는 관행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한 여성 스포츠 스타의 성폭력 사건 이후 입법과 행정, 그리고 학계에서 쏟아져나온 대책들은

11) 「헌법」 제32조 제4항,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 제1항, 「성폭력방지법」 제8조 등

새로운 차원의 논의라기보다 이전에 논의되었던 ‘돌려막기’ 정책에 불과했고(홍덕기, 2021), 이런 관행은 그동안 논의된 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현장에 연착륙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법령과 국제 스포츠계에서 통용되는 각종 규정, 그리고 정부와 체육단체들의 시책들은 더 세부적인 실천 과제나 그 강제성을 담보하는 제재를 수반하거나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정부 부처와 단체 간의 협력 관계 강화 등과 같은 실천적 방안들을 요구하고 있다(임용석, 홍덕기, 2021).

성평등을 비롯하여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는 인권이 보편성에 기반한다는 당연한 명제에 따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체육계는 스포츠 인권 문제 및 대책에 있어서 만큼은 유독 엘리트스포츠 선수 출신 여부를 기준으로 ‘체육인’과 ‘비(非)체육인’을 구분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체육인’의 범주 안에 들지 않으면 이들을 배제하며 체육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인권이라는 보편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관행을 보여왔다. 이 같은 태도는 놀랍게도 국제적 흐름이나 사회적 통념과는 다르게 체육/스포츠계에서 ‘당위’에 의한 가치를 무력화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김현수, 홍덕기, 2022). 하지만 스포츠 세계의 개별특수성이 인권 논의의 보편성과 상충하는 상황에서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필연적으로 당위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인권이 지향하는 보편성을 따르는 것이 합당할 수밖에 없다(김현수, 2020).

성평등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출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그리고 다양한 성들이 차별 없는 존재임을 인식할 때 시작되는 것이다. 강조하지만 인권의 기본 방향은 ‘모든 사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인권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성평등의 당위성을 상정하고, 스포츠계에서의 인권적 보편성을 확보해 나가야 함과 동시에 인권을 체육계의 ‘특수성’으로 수렴하여 다루는 것과 그 결과에 따라 ‘특별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비인권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현수, 2018; 2021).

따라서 체육계의 남성 중심 문화에서 인권적으로

도출해내야 할 성평등을 위한 과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의 과제를 상정하는 것을 전제로 여성의 참여를 중대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련의 방침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미국 교육평등법 「Title-IX」도 여성의 스포츠 참여에 있어서 성차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었지, 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 ‘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 성평등 증진을 위한 교육의 적절성

2019년 발생한 스포츠 성폭력 사건 이후 체육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조직에서 스포츠 인권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교육은 교육방식, 교육내용, 교육의 질 관리 등에 있어서 대규모, 형식적, 일회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김동혁, 정은, 류태호, 2021). 특히, 성평등 인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 관련해 대부분이 ‘성폭력 방지·교육으로 국한되어 있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등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최근 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KUSF)에서 실시한 대학교 학생선수 스포츠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스포츠인권 감수성, 성인지감수성, 스포츠인권 리터러시, 동의, 차별, 혐오, 배제, 성평등, 자기결정권, 자기존중 등의 개념을 최신 영상 등과 함께 토론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례를 제시해 준다(홍덕기, 함은주, 천종문, 2022).

하지만, 본질적으로 스포츠 성평등과 관련한 정책에 특화된 예산 및 조직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스포츠 관련 각 기관이 성평등 증진 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해 운영한다면 효과적이겠으나, 그 기회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일부에서는 교직원, 공무원에 준하도록 현행 폭력, 성폭력 방지 교육과 차별적인 인권 교육으로 통합 운영하자는 주장들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통합의 주요 골자가 폭력 등의 방지 교육과 성평등 증진 교육을 각각 침해와 차별의 문제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육 현장에서 기존의 성폭력 방지 교육으로 회귀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육 현장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차별철폐를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는 성평등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기본권의 문제로 보고, 성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 전통적인 인식과 관행에 다른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차별철폐에 있어서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철폐의 당위성을 지적하는 수동적인 형태의 교육으로는 곤란하다. 스포츠 성평등 교육의 방향은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성평등 관련 법령과 정책, 그리고 국제 스포츠 원칙들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는 국제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상기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모든 합의는 국제적 약속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우리는 이제 약속을 잘 지킬 궁리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이다. 이런 맥락에서 「Title-IX」은 한국 사회의 교육 평등에 대해 입법보다 실천적 교육을 비롯한 그 맥락들이 구성하고 있는 실천의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3. 국가 성평등 관련 정책과의 합치성

앞서 제시된 인권 NAP, 즉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인권 의제들은 국가가 다루고자 하는 인권의 우선순위가 잘 나타나 있다. 스포츠 활동이 일반사회의 가치와 결코 괴리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이지도 않으며, 서로 간의 연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번 제4차 인권 NAP에 나타난 중점 과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스포츠 분야에 적용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제4차 인권 NAP 권고에서 다루어진 성평등 관련 과제는 소득격차 해소, 공적 영역에서의 대표성 강화, 성폭력과 2차 피해,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또는 가정 폭력,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지속적 예방 및 피해구제 정책 필요,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 보장 필요 등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따라서, 인권 NAP와 같은 국가 인권 정책의 흐름

이 강조하는 이슈들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스포츠계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의 인권 정책에서 다루어지는 세부적인 인권 아젠다들은 스포츠와 결코 괴리된 내용들이 아니며, 오히려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지점에 있는 것이다. 아울러 차별 전반에 있어서 추진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통해 차별철폐와 제재의 법적 근거 마련을 도모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스포츠계의 성평등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결론

스포츠계에서의 성평등은 여성 혹은 다양한 젠더들의 신체적 역량과 그 발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분야임을 확인하고,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인식 확산과 정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IOC를 비롯한 국제 스포츠계는 물론 성평등을 다루는 각종 국제 협약과 법령들에서도 특별히 성을 이유로 스포츠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 같은 성평등 기조와 정책은 불필요한 젠더 논란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관련 법령이 갖추어지고, 일정 예산이 투입되어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를 비롯한 관련 지표들은 OECD 최하위권¹²⁾을 면치 못하고 있고, 난무하는 관련 법령과 정책은 가시적으로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 사회의 여성과 성적 소수자들은 심각한 신체활동 부족에 처해있어 그 미래 또한 암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자주 제기되는 입법이라는 대책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미 구비되어있는 법령의 세부적인 목록들을

12) OECD(2022). Gender data portal(www.oecd.org/gender/data)의 gender pay gap in OECD countries에서 최하위

제시하고, 정책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성평등 정책의 실천성 문제, 성평등 증진을 위한 교육의 적절성 문제, 그리고 국가 성평등 관련 정책과의 합치성 문제 등을 상정하였다. 이를 통해 추후 입법부 차원에서의 관련 입법이 검토될 때, 더욱 세밀한 실천 지향적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가 체육 정책 전반의 고질적인 성별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탐색하는 것과 더불어 스포츠계에서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논의 마련의 기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은하(2004). 올림픽과 여성스포츠. *스포츠과학*, 87, 22-28.
- 곽정현, 이선희(2014).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스포츠의 방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3(6), 299-311.
- 교육부(2020).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1). 2021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10. 12. 6.) *스포츠인권현장 및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20. 6. 2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21. 11. 25.). *여성전문체육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22. 8. 3.). *2023-202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2020). *여성 전문체육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미간행 연구용역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 권형준(2017). 여성스포츠선수의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 이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성폭력과 관련하여-. *법학논문집*, 41(3), 267-298.
- 김동혁, 정은, 류태호(2021). 스포츠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14(1), 109-140.
- 김성진(2014).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7(4), 59-77.
- 김현수(2018). 스포츠는 인권인가?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6(1), 19-34.
- 김현수(2020). 학생선수 스포츠 인권 정책 분석과 개선방향 : (성)폭력 피해구제와 보호를 중심으로.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8(3), 67-83.
- 김현수(2021). *인권과 스포츠*. 서울: 노사이드.
- 김현수, 김동규(2013). 올림픽종목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사회철학적 쟁점.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1(4), 141-162.
- 김현수, 홍덕기(2022).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국가적 대응조직의 성과와 과제 I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진단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61(4), 323-342.
- 대한체육회 보도자료(2019. 9. 26.). 대한체육회 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 혁신과제안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2008). 성폭력 근절대책.
- 박두제, 원영신, 이재희(2013). 여성 아이스하키 동호인의 경기 참여 촉진을 위한 실행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7(2), 127-144.
- 서재철, 김방출 (2020). Title IX를 '탈-신화화'하는 스포츠문화사 관점의 논의: 1970년대 미국 여학생들의 야구 참여 관련 법정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7(1), 119-140.
- 안혜민(2021. 8. 6.). *[마부작침] 도쿄올림픽의 성평등 어디까지 왔을까?*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1959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유니세프(2019).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스포츠 원칙.
- 이규일(2020). 여학생의 일상생활 신체활동을 제약

- 하는 환경요인 탐색: 포토보이스. **체육과학 연구**, 31(2), 275-292.
- 이규일, 홍덕기(2017). 학교체육의 건강교육 방향 탐색: 북미 학교기반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이 주는 시사점.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4(4), 1-34.
- 이정규(2015). 학교체육의 양성평등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타이틀 나인의 3가지 검사에 대한 활용.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8(3), 115-140.
- 임용석, 홍덕기(2021). 엘리트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방안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6(3), 57-76.
- 전영지(2015. 6. 3.). 【여학생체육】 美여자축구 최강 이끈 '타이틀9'의 힘, 한국형 '타이틀9'은? 스포츠조선 인터넷판,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506040100035340002168&ServiceDate=20150603>
- 조미혜, 강승애, 이은미, 허현미, 배경희, 김복희, 김원정, 김선희, 김애랑 역(2015). **Title IX**. 서울: 대한미디어.
- 하재림(2019. 11. 22.). **한국 청소년 운동부족 세계 최악…여학생은 146국 중 '꼴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2059700009>
- 한건수(2020). 한국 여자축구의 역사와 발전과정: 미국 여자축구와의 비교.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3), 227-235.
- 홍덕기(2021). 스포츠 인권 정책분석을 통한 인권 침해 원인과 향후 과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4(1), 23-52.
- 홍덕기, 함은주, 천종문(2022). 대학교 학생선수를 위한 스포츠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체육과학연구**, 33(4), 701-712.
- IOC(2020a). **Olympic Charter**. Lausann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 IOC(2020b). **Olympic agenda 2020+5, 15 recommendations**. Lausann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 『교육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체육진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스포츠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학교체육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헌법』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